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6. 21.(화) 10:00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및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 제안이유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다산면 곽촌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259,801㎡

3. 결정(변경) 사유

-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공익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적정규모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제시의 건은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2018년부터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왔으며, 의회 의견제시 후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규제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다산 곽촌지구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 제안이유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 상 : 고령군 성산면, 개진면 일원

나. 면 적 ; 2.68km²

- 성산면 1.57km², 16개소

- 개진면 1.11km², 15개소

다. 계획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3. 검토의견

○ 본 제시의 건은 고령군 내 개발압력이 높은 성산면, 개진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난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성산면과 개진면을 대상으로 설정기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며,

성장관리계획(안)은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령군 전체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역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